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길영 의원 발의)

의안 번호	3462
----------	------

발 의 년 월 일: 2026년 02월 09일
발 의 자: 김길영 의원(1명)
찬 성 자: 강석주, 김영옥, 김영철,
김용호, 김원중, 김원태,
김지향, 김태수, 김혜영,
남궁역, 남창진, 문성호,
유만희, 윤기섭, 윤종복,
이상욱, 이성배, 이종환,
이효원, 임춘대, 정지웅,
최민규, 허 훈, 홍국표
의원(24명)

1. 제안이유

- 조례상 “공공디자인 사업의 시행자”와 “공공디자인 사업자”의 용어가 혼용되고 있어 조례 용어를 “공공디자인 사업의 시행자”로 통일하고자 함
- 또한 현행 조례의 회의록 작성·비치 방식에 대한 해석상 혼선을 해소하기 위해 회의록 작성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제24조제6항의 “공공디자인 사업자”를 “공공디자인 사업의 시행자”로 개정하여 용어를 통일함
- 나. 제14조제3항의 “회의록을 요약하여”를 “회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로 개정하여 회의록 작성 기준을 명확히 함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타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후단 중 “회의록을 요약하여”를 “회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로 한다.

제24조제6항 중 “사업자”를 “사업의 시행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4조(위원회의 운영) ①·② (생략)</p> <p>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디자인정책과장을 간사로 둔다. 간사는 <u>회의록을 요약하여</u> 작성·비치하여야 한다.</p> <p>④ (생략)</p>	<p>제14조(위원회의 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u>회의 주요 내용</u> <u>을 정리한 회의록을</u> -----.</p> <p>④ (현행과 같음)</p>
<p>제24조(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사업) ① ~ ⑤ (생략)</p> <p>⑥ 공공디자인 사업이 완료되는 경우 공공디자인 <u>사업자</u>는 완료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⑦·⑧ (생략)</p>	<p>제24조(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사업) ① ~ ⑤ (현행과 같음)</p> <p>⑥ ----- ----- <u>사업의 시행자</u>----- ----- -----.</p> <p>⑦·⑧ (현행과 같음)</p>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상 “공공디자인 사업의 시행자”와 “공공디자인 사업자”의 용어가 혼용되고 있어 조례 용어를 “공공디자인 사업의 시행자”로 통일하고 조례의 회의록 작성·비치 방식에 대한 해석상 혼선을 해소하기 위해 회의록 작성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한 것으로, 자구수정 등 조문정비에 해당하여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대상에서 제외함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과

재정분석과장 이 선 희

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

추 계 분 석 관 김 경 명

☎ 02-2180-7954

e-mail : kimkmi0809@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